pwc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 발표: 지역 간 장벽 타파, 법집행 수위 통일

2026.10

Issue 15

개요

세무 행정처벌 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2026 년 9 월 28 일 공식으로《<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6 년 제 20 호, 이하 "20 호 공고")[1]를 발표하여,《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이하 "《재량기준》")이 202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은 지역 내 통일만 이루어졌을 뿐, 전국 31 개 성·시 및 5 개 계획단열시가 각각 6 대 지역[화북지역, 동북지역, 화동지역, 중남지역, 서남지역, 서북 5 성(구)] 재량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재량 단계와 벌금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통일 적용되는 재량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세무 행정처벌 재량권이 "성 내 통일"에서 "지역 통일"을 거쳐 "전국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Newsflash 는 체계적으로《재량기준》의 주요 내용 및 핵심 변화를 소개하며, PwC 의 전문적인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재량기준》 개요

이번에 발표된《재량기준》은 9 개 유형, 66 개 항목의 세무 위법 행위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등기 관리 위반(제 1-10 항), 장부·증빙 관리 위반(제 11-15 항), 납세신고 관리 위반(제 16-18 항), 세금(비용) 징수 관리 위반(제 19-30 항), 세무검사 관리 위반(제 31-33 항), 세금계산서 및 기타 납세증빙 관리 위반(제 34-59 항), 납세담보 관리 위반(제 60-62 항),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 관리 위반(제 63-65 항), 세무 관련 정보 보고 위반(제 66 항).

각 세무 위법 행위에 대해 재량 단계를 세분화하였으며, 총체적으로 "경미, 비교적 경미, 보통, 비교적 심각, 심각"의 5 가지 재량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적용 조건 및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적용 조건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 근거로는 위법자의 협조 또는 시정 태도, 자진 추징세 납부 상황, 위법 행위 발생 빈도, 위법 관련 금액, 위해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 단계 내의 구체적인 처벌 금액은 개별 사안의 정황을 결합하여 결정해야 하며, 여전히 세무기관의 자유재량이 필요하고, 특정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고정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기준》 부록 제 19 항 납세인의 "탈세 행위"를 예로 들면, 현행《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납세인이 탈세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 및 연체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재량기준》은 이 법정 범위 내에서 3 가지 정량화 가능한 재량 요소인 "5 년 내 처벌 횟수",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 금액",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비교적 경미, 보통, 비교적 심각, 심각"의 4 가지 재량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비교적 경미"와 "보통" 단계에서는 각각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및 50%에서 1 배의 벌금을 부과하여, 집행 인원의 자유재량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각"과 "심각" 단계에서는 각각 "1 배에서 3 배" 및 "3 배에서 5 배"의 비교적 큰 폭의 처벌 구간을 적용하며, "세무검사에 불협조, 위법 수단 악질성,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 위해 결과 심각" 등의 복잡한 정황을 결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재량기준》은 또한 "5 년"의 계산 기준에 대해 특별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날 이전 60 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 여러 지역 간에 "X 년"의 구체적인 계산 기준에 대해 존재했던 차이도 통일한 것입니다.

아울러, 납세인의 탈세 행위에 대해《재량기준》은 "세무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세무기관이 세무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진하여 전액 조사추징세액을 보충 납부한 경우, 각 단계의 최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 협조"의 중요한 의의를 부각시켜, 기업이 조사 대응에서 감경 처벌을 받기 위해 명확한 규칙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납세인의 탈세 행위 외에도, 제 20 항 원천징수의무자의 유사 위법 행위, 제 21 항 "납세인이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제 23 항 "국가 수출환급세를 편취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적용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재량기준》은 현행 세법 규정에서 규정한 세무 행정처벌 재량권을 세분화하고 정량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처벌 구간을 위법 정황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이며, 일정 정도 자유재량 여지를 축소·제한한 것이지 새로운 처벌 사항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법정 처벌의 종류와 수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 제 19 항 발췌

위법 행위 사항	법적 근거	재량 단계	위법 행위 사항	법적 근거
납세인이 장부, 회계증빙을 위조·변조·은닉·임의 소각하거나, 장부에 지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입을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의 신고 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납세신고를 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 63 조 제 1 항 납세인이 장부, 회계증빙을 위조·변조·은닉·임의로 소각하거나, 장부에 지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입을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의 신고 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납세신고를 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는 탈세임. 납세인이 탈세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 및 연체금을 추징하고, 미납 또는과소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함.	비교적 경미	**5 년 내 처음으로** 세무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50 만 위안 미만이거나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보통	**5 년 내 처음으로** 세무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50 만 위안 이상이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1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비교적 심각	**5 년 내 2 회 이상** 세무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50 만 위안 미만이거나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또는 기타 비교적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심각	**5 년 내 2 회 이상** 세무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50 만 위안 이상이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세무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세무기관이 세무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진하여 전액 조사추징세액을 보충 납부한 경우, 각 단계의 최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유의해야 할 점은,《재량기준》은 현행 세법 규정에서 규정한 세무 행정처벌 재량권을 세분화하고 정량화한 것으로, 광범위한 처벌 구간을 위법 정황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이며, 일정 정도 자유재량 여지를 축소·제한한 것이지 새로운 처벌 사항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법정 처벌의 종류와 수준을 변경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량기준》의 주요 변화 및 요점

一、"경미불벌(轻微不罚)" 목록 신규 추가: "초범불벌(首违不罚)" 목록을 결합하여 총 22 개 사항이 처벌 면제

20 호 공고는《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2] 제 33 조 제 1 항의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되었으며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세무 행정처벌 "경미불벌" 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무등기, 장부·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세무 관련 정보 보고 등의 유형을 포함한 8 개 항목의 행정처벌 사항을 포괄합니다. 적용 조건은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세무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하였으며,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생 빈도를 제한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재량기준》은 또한 기존의《세무 행정처벌 "초범불벌" 사항 목록》[3]과《제 2 차 세무 행정처벌 "초범불벌" 사항 목록》[4]에서 이미 명시한 14 개 항목의 "초범불벌" 사항을 모두 관련 위법 행위 사항의 "경미" 단계에 포함시켜 처벌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1 년 내 최초 위반이고 위해 결과가 경미하며, 세무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현재 총 22 개 항목의 세무 관련 경미 위법 행위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재량기준》은 또한 "최초 위반"의 기준을 명시했는데,

즉 "하나의 자연연도 내(즉, 당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최초 발생"이며, 이 기준은 과거 각 지역에서 "최초 위반" 인정 기준이 일치하지 않던 문제를 통일한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경미불벌"과 "초범불벌"의 경우 행정처벌만 면제될 뿐, 납세의무 자체 및 관련 연체료는 이로 인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二、세금계산서 및 기타 납세증빙 관리 개선, 플랫폼 정보 신고 신규 추가

세금계산서 및 기타 납세증빙 관리는 금번《재량기준》중 규모가 가장 큰 유형으로, 총 26 개 항목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포괄됩니다.

적용 논리에서, 20 호 공고의 공식 해설[5]은《재량기준》과《"규정 준수 세금계산서 발행" 판정 기준의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6] 간의 연계 관계를 특별히 명확히 하였습니다: "규정 위반 세금계산서 발행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28 가지 규정 위반 세금계산서 발행의 흔한 정황 또는 현저한 특징이 열거되어 있으며, 납세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규정 위반 세금계산서 발행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가 "정성(定性)" 도구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며, 재량기준은 "정량(定量)" 도구로서 규정 위반 행위가 확정된 후 처벌 수준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어, 세금계산서 유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한 행위 인정 기준과 통일된 처벌 재량 수위를 모두 갖추도록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 일부 사항은 디지털화 경영 환경에 맞춰 적응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분실 상황(제 47 항)에 대해, 이미 정보화 관리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정보가 업로드되었거나 온라인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분실된 경우, 납세인이 자진하여 보고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며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관련 정보 보고 위반 유형(제 66 항)에서는《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 관련 정보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플랫폼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무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등급별 처벌 기준을 설정하여, 플랫폼 기업의 세무 관련 정보 보고 의무 이행을 통일된 재량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술한 조정은 《재량기준》이 처벌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경제 하에서 비즈니스 형태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여, 재량 규칙을 실제 경영 환경에 더욱 부합하도록 만들었음을 나타냅니다.

三、사회보험료 체납이 처벌 사항에 포함

《재량기준》은 "고용 단위가 규정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를 "세금(비용) 징수 관리 위반" 처벌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량 기준에서는 "체납금액 + 비용금액 비중"의 이중 차원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가 전면적으로 세무부문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보험 준법은 전통적인 "인사·사회보장 감독관리" 모델에서 "세무 감독"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업 재무부서와 인사부서는 협력 대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보험 신고 기준액과 실제 임금 데이터를 대조·확인함으로써 납부 기준액의 정확성과 신고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四、신구 정책의 연계: 구법 및 경감법률 우선적용 원칙(从旧兼从轻原则)

20 호 공고는 공고 시행 전에 세무 위법 행위가 발생하였고 세무기관이 아직 해당 세무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세무 위법 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되,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납세인·납부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법 및 경감법률 우선적용" 연계 원칙의 확립은 조사 또는 자체 점검 처리 절차에 있는 기업에게 감경 처벌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026 년 11 월 1 일 이전에 이미 세무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지 못한 진행 중 사건의 경우, 새로운 《재량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처벌 강도가 더 관대하거나 "경미불벌" 범위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새로운 《재량기준》의 적용을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량 수위의 전국 통일은 지역 간 집행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 간 경영에 따른 제도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규범화되고 정량화된 처벌 기준을 통해 시장 주체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세수 준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간 경영 기업의 경우 이로써 통일된 준법 예측을 확보하게 되어, 각 지역 집행 기준의 차이를 위해 추가적인 준법 비용과 리스크 완충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26 년 11 월 1 일 시행 예정인 신규 규정에 대응하여, 기업은 시한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자체 점검과 준법 메커니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에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검사에 직면할 때 적극적 협조와 자진 시정의 대응 사고방식을 확립하고, 준법 관리를 사전에 마련하여(예: 정기 자체 점검, 자진 시정 신고, 적시 세금 보충 납부) 처벌 면제 또는 감경을 도모합니다.
- 기업의 일상 세무 관련 사무 관리 대장을 정비하여 처벌 면제 또는 더 낮은 처벌 기준을 주장하기 위한 탄탄한 증거 사슬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자연연도/2 년/5 년을 주기로 하는 세무 관련 위법 행위 기록 대장을 구축하고, 세무기관의 문서, 정정 신고 시스템 기록 등을 적절히 보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취득, 보관, 납부·소각의 전 과정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재량 단계별 등급 기준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 리스크 등급 관리 수립을 고려합니다.
- 사회보험료의 준법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금액과 비율 지표를 월별 재무 모니터링에 포함시킵니다.
- 진행 중인 세무 관련 분쟁 및 조사 안건을 정리·점검하고, 신구 기준을 대조하여 정밀하게 비교·검토함으로써 "구법 및 경감법률 우선적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주석

1.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6 년 제 2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52754/content.html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703add20177373df6a43e33

3. 《국가세무총국의 <세무 행정처벌 "초범불벌" 사항 목록>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 년 제 6 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4/06/content_5597924.htm

4. 《국가세무총국의〈제 2 차 세무 행정처벌 "초범불벌" 사항 목록〉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 년 제 33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634/content.html

5.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세무 행정처벌 재량기준(2026 년)> 발표에 관한 공고》의 해설
http://beijing.chinatax.gov.cn/bjswj/sszc/zcjd/202610/7122345a5ba640b9ad36d162ce21499d.shtml

6. 《"규정 준수 세금계산서 발행" 판정 기준의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c102414/c5249173/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태규 (86) (21) 2323-8164, julian.t.yoo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10 月 15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